

대구지방법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3나302348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수학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8가단117651 판결
환송전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나30157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변론종결	2024. 1. 18.
판결선고	2024. 2. 8.

주 문

-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9.부터 2008. 12.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 변경하였다)<각주1>

1) 피고는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G(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는 원고에게 G가 피고의 청산절차 종결 후 주주로서 분배받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11.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C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당시 피고의 주식은 C, D이 각 10%, G의 형 E가 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D의 주식 10%는 2004. 1. 31. 증여를 원인으로 G의 처 H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대구 수성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2.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G에게 2006. 7. 7. 2,000만 원, 2006. 11. 9.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1. 9. G의 아들 I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수성구 Q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처 R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처 R는 2008. 10. 8.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로 52,390,097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이후 대구지방법원 2008차14829호로 G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2. 16. ‘G는 원고에게 1억 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8. 12.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고 2009. 1. 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바. 피고는 2009.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6. 28. 회사계속등기가 마쳐졌는데, 회사계속과 함께 G가 피고의 대표이사, G의 처 H가 피고의 사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7. 12. 12. 다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고, 이와 동시에 G가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사. 원고는 2018. 5. 8.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6750호로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채권을 309,545,292원(= 2008. 10. 9.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추심채권을 ‘G가 피고의 대표청산인 및 주주의 자격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정본은 2018.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아. G는 2021. 7. 20. 대구지방법원에 대구지방법원 2021하단11072, 2021하면1107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15. G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22. 3. 23. 파산 폐지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면책결정에 대한 원고의 항고(대구지방법원 2022라10312)가 2023. 5. 17., 재항고(대법원 2023마6117)가 2023. 8. 25. 각 기각되어 이 사건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자. G가 위 파산 사건에서 2021. 7. 20.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G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2, 16, 28 내지 30호증, 을 제1, 2, 9, 15, 18, 19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G가 사실상 지배주주인 1인 회사로서, G는 설립자금을 모두 출자하였고, 모든 주식은 C, O, P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후 이를 본인 소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여 왔다. 피고는 현재까지 오로지 G의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재산도피 수단으로만 이용되었을 뿐 법인 본래의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회사로서 비록 피고가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G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바, 피고가 G와 별개의 법인격을 내세워 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5, 19, 21, 22, 23, 3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또는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법인격이 형해화 된 피고를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G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보인다.

①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주식 지분 10%를 소유하였던 C는 2003. 4. 3.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E로부터 피고의 자본금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 개인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 제23호증의2)를 작성하였으나, E는 관련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9고정 577)에서 피고에게 설립자금 5,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② 피고의 주식 지분 80%를 가진 E는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설립될 당시 동생인 G가 E를 주주로 등재하겠다고 부탁하여 피고의 주주가 되었고, 피고 주식 8,000주에 대하여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③ 피고 설립 당시 이사이자 주식 지분 10%를 소유하였던 D은 위 형사 사건에서 다른 주주 E, C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경매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G의 부탁으로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사로서 활동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④ D은 2004. 1. 31. 자신이 소유한 피고의 주식을 모두 G의 처인 H에게 양도하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H가 이사로 취임하였다.

⑤ G는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06. 10.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2011. 6.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7. 12. 11.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각 취임하였다.

2) 그러나 G가 피고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1인회사를 넘어 피고의 법인격 자체가 무시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G가 피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 수익하였다는 사정도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정에 해당한다.

3)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K, S(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03. 4. 15.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대구 수성구 L 및 T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2004. 9. 9. 매각결정을 통지받았으며, 2005. 1. 13. 대구 중구 M아파트 N호를 최고가매수인으로 매수하였다. 이는 부동산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가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4)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고(제1항), 해산간주된 회사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제3항), 회사계속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제4항). 그러나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제도는 거래 안전 보호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G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4. 2. 20.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06. 7. 7. 및 2006. 11. 9.에서야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므로, G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거나 후에 있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자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6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G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출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7) G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들 I 소유의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처 R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실제로 원고의 처 R는 2008. 10. 8.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로 52,390,097원을 배당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및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8)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발생 당시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G가 채무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시점 이후 피고가 영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법인격남용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21. 6. 21. G를 대위하여 피고 주식 중 G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8,000주에 관한 명의수탁자 E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주식 8,000주에 관하여 G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G는 주주로서 상법 제538조에 따라 청산중에 있는 피고의 잔여재산 중 주식 8,000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분받게 될 것이며, 원고는 위 돈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주주로서 분배받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는 G의 채권자로서 G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G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G의 책임이 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G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G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추심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에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8. 자 2009마783 결정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바, G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파산채권에 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G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의 소는 추심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서은(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별 지

[별지]

주 식

발행회사 : 주식회사 B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발행주식의 총 수 : 10,000주

주주명 : E(주민등록번호 2 생략)

권면액 : 1주당 5,000원

주식 수 : 8,000주

각주1: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청구들은 모두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어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으나, 원고가 이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순서를 정하여 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